(별지 제15호 서식)

월별납부 영수증서[납부자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회계년도	

납부기한	년 월 일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 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세 (보 정 이 자)		가 산 금	

납부시 아래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년 월 일		
수입징수관	영수일 년 월 일	

<안내말씀>

1.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관세) 또는 인터넷 신용카드결제(www.cardrotax.kr 참조, 365일 가능(단, 금융결제원 정기점검 시간인 23:30~00:30 납부 불가).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5%)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3. 납부일(영수일)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세액을 체납시(위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전액을 즉시 일괄징수하게 됩니다.
5. 납부세액에 부족한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보정신청 또는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청 업무안내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별납부서[수납기관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회계년도	

납부기한	년 월 일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일 년 월 일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